

갑천 수상레저 체험교실 안전관리계획

I. 시설 현황

○ 엑스포 수상공원 규모 : 폭 160m, 연장 1,690m, 수심 2.3m

- 안 내 : Tel 250-3020, 472-8865, 472-3047
- 홈페이지 : <http://www.watersports.or.kr/>

○ 시설현황 (최초개장 : '12.4.28 / 공사기간 2011.12 ~ 2012.4)

- 정고 : 사업비 200백만원('09년) / 장비보관(동절기),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 관리사무소 및 계류시설 : 사업비 1,400백만원(국비 400, 시비 1,000)
 - 사무실 36㎡, 바지선 232.50㎡, 접안시설 112.32㎡, 클럽하우스 58.32㎡
 - ※ 1층 : 대기실, 의료실, 장비보관실(구명조끼 등) / 2층 : 안전요원 감시대

○ 운영주체 : 대전광역시체육회 (위탁기간 2017. 1 ~ 2022.12.31)

체험장

- 운영기간 : '17. 4. 1 ~ 10. 31(7개월)
- 운영시간 : 11:00 ~ 17:00(월요일 휴무 / 장비 점검)

○ 수상기구 : 시민이용 5종 41대

- 시민이용 : 카약 12, 카누7, 드래곤보트5, 래프팅2, 페달보트15
- 기 타 : 모터보트(구조용1), 수상오토바이(구조용1)

○ 안전장비

구 명 동 의	구 조 튜 브	구 급 함	수상구명도구 (수용성들것)	심장제세동기
200조	40개	2개	2	1

※ 구조장비 : 2대(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 대전 동구청 동북)

II. 근무자 현황 및 임무

○ 근무자 : 8명

구 분	인원	자 격	임 무	비 고
관리장	1	모터보트 운전자는 자격증 소지자	체험장 총괄 관리	
강 습 및 구조요원	7	인명구조 자격증 소지자	안전관리 재난시 구조활동, 교육행사 준비 및 보조 등	

○ 근무자 임무

※ 매일 근무 개시전 근무자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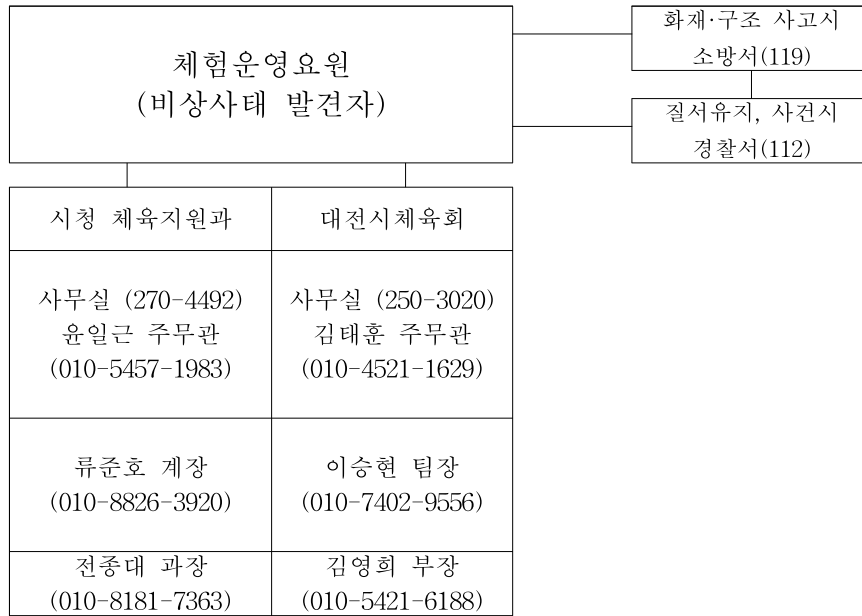
- 체험장 주변 이용자 질서 유지
- 이용자 안전교육 및 구명동의 착용 후 체험토록 안내
-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협조체계 상시구축
- 체험기구 안전상태 상시 점검 및 근무자 정위치
- 이용객 안전장비 착용 조치 및 교육
- 수상레저 기구 시설 안전점검
- 그 밖에 체험장 운영 관련한 체육회 요구사항
- 드래곤 보트, 카누·카약 아카데미 교육
- 기상재해(태풍, 집중호우)시 수상체험장 이용통제
- 장비 진입로 주변 이용자 안전관리 및 시설 이용안내
- 기상 악화시 운영 중단 및 각종 수상장비 정고 이동

III. 안전관리계획

● 소방 관서 연계 안전대책

- 체험장, 119 수상구조대 구조연계 구축
- 체험장 사고 신고시, 긴급 출동 체계 구축
- 매월 1회 구조 훈련 실시
 - 소방본부, 체험장 근무자 참여
 - 익수자 발생시 긴급구조 훈련

● 비상연락망 체계도



● 긴급상황시 대처요령

1. 2층 망루 근무자 입수자 발견
2. 긴급 방송안내(입수자 위치 확인)
3. 안전요원 제트스키 및 모터보트 출동
4. 위험 상황 시 119 대전북부소방서 긴급연락
(사안에 따라 경찰관서 112 연락)
5. 입수자 구출 및 이상 유무 확인, 응급처치
6. 입수자 안전하게 계류장 이동, 병원이송
7. 입수자 신원 확인 파악 (이름, 연락처, 사는 곳)

● 안전보험 가입

-종사자·이용자안전보험가입:한화수상레저종합보험 (2017.4.1.~10.31)

[별표 7] <개정 2014.3.24>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 (수상레저안전법 제15조 관련)

1.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항해구역에 준수하여야 한다.
2. 다이빙대·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험 발생 요소가 많은 구역이라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운항지침을 따라야 한다.
3.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구역의 기상 상태를 고려하여 그 운항을 허용한 경우
 - 나. 기상특보 중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그 운항신고(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운항시간, 운항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를 한 경우
 - 다. 기상특보 중 경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그 운항신고(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운항시간, 운항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를 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허용한 경우
4.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수신호 등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 쪽으로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5.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6.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추월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수상레저기구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레저기구의 소음기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굉음을 발생시켜 놀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안개 등으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레이더 및 초단파(VHF) 통신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